

# 동물성 식품 수입위생평가 제도 시행 안내

2023년 6월 13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공포로 현재 축산물에만 적용되는 수입위생평가 제도가 2024년 6월 14일부터는 ‘동물성 식품’에도 확대·적용되어 수입이 허용된 국가로부터만 수입신고 가능합니다.

\* 동물성 식품 : 동물의 식육·원유·알 또는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식육함유가공품, 알함유가공품, 기타식육·알)

수입위생평가 제도는 수출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수입허용을 요청하는 경우, 수출국의 위생관리 실태 전반을 평가하여 국내 안전관리 체계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수입을 허용하는 제도로 현재 많은 국가에서 식품안전을 위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동물성 식품에 대해서도 사전에 위생평가를 거쳐 보다 안전한 식품을 수입·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수입식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계기로 이어질 것입니다.

다만, 제도 시행 이전에 동물성 식품을 수입한 실적이 있는 국가(하단 내용 참고)에 대해서는 2025년 6월 13일까지 계속 수입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해당 국가로부터 동물성 식품을 수입하고 있거나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영업자께서는 수입위생평가 절차 진행을 위해 해당 수출국 정부에서 식품 의약품안전처에 수입허용 요청할 수 있도록 동 제도를 수출국 정부와 해외제조업소측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적용대상·시행시기 및 절차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식품의약품안전처 현지실사과(043-719-6221/6223)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적용대상

- **(동물성 식품)**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에서 분류하는 유형 중  
17-8 식육함유가공품 / 18-2 알함유가공품 / 21-1 기타식육 및 기타알
  - 식품유형 **17-8. 식육함유가공품** : 식육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것으로 축산물(식품유형 17-1~17-7)에 해당되지 않는 것
  - 식품유형 **18-2. 알함유가공품** : 알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것으로 축산물(식품유형 18-1)에 해당되지 않는 것
  - 식품유형 **21-1.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 :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하는 가축에 해당하지 않는 동물의 식육 또는 알(식용을 목적으로 생산한 동물의 알, 지육, 정육, 내장 또는 기타 가식부분)

## ◆ 시행시기 (제품의 원료축산물 수입허용국가 및 수입실적에 따라 다름)

- **(원료식육·식용란 수입허용국가\*)** 수입위생평가 없이 계속 수입가능  
\*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별표] 기준
- **(원료식육·식용란 수입 미허용국가 & 수입실적有)** 동물성 식품에 함유된 원료 축산물은 수입 허용되어 있지 않으나 수입이력이 있는 경우, '25.6.13일까지만 수입가능('23.12월 기준 7개국\*)  
\* 식육함유가공품 중국·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벨라루스  
\* 알함유가공품 중국·베트남·인도·말레이시아
  - 해당일까지 수출국 정부가 수입위생평가를 받아 수입허용국가에 등록되지 않을 경우에 '25.6.14일부터 수입불가
- ▶ 수입위생평가 절차 진행을 위해 해당 수출국 정부의 수입허용 요청 필요 (\*평가절차는 수출국의 협조 정도에 따라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어 조속히 신청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독려 필요)
- **(원료식육·식용란 수입 미허용국가 & 수입실적無)** '24.6.14일부터 수입 신고 불가하며, 수입위생평가 절차 진행 필요

## ◆ 수입위생평가 절차 (6단계)

- 축산물의 수입위생평가 절차와 동일하며, 수출국 정부의 동물성 식품 수입허용 요청 시 설문서 송부 등 절차 진행  
\* ①단계 설문송부 → ②단계 답변검토 → ③단계 현지조사 → ④단계 수입허용여부결정 → ⑤단계 수입위생요건 등 협의 → ⑥단계 해외제조업소 등록

# 식육(알)함유가공품 유형분류 흐름도

